

교습비 반환에 관한 규정

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※ 반환사유 발생일 : 반환 요구자가 학원 수납처 담당직원에게 반환을 요구한 날

[교습비등의 반환기준]

구분		반환 사유 발생일	반환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	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	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	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